

한국생약보

2000년 1월 1일

THE HANKOOK-SAENGYARK 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237호

만고 찾을 수 있는곳!

한국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인 쇄 인

임연학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TEL:967-8133 FAX:965-0643

종자산업 새천년 첨단지식산업으로 급부상

21세기! 보다 치열한 유전자원 전쟁시대 개막을 앞두고 종자산업은 이제 다가오는 새천년을 이끌어 갈 첨단 지식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 앞으로의 세계종자시장에서는 생명공학 기술의 활용과 품종보호제도의 운용에 의하여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로 신品种를 개발한 육성자의 권리와 품종보호제(종자산업법)를 지난 9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엔 UPOV(신品种보호동맹)가입 추진과 관련해 활발한 대응방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1월26일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 주최로 열린 'UPOV 가입과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확대 방안 심포지엄'도 그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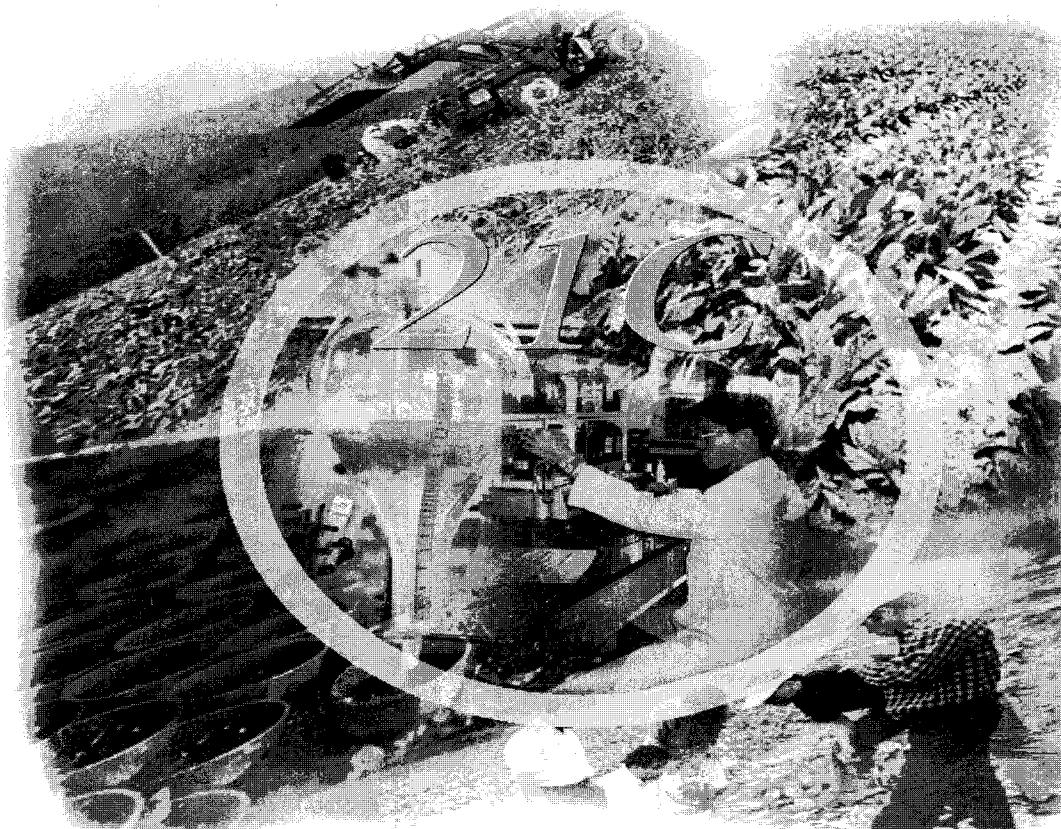
신品种 육종가 독점권리 보호

품종보호제도는 신品种를 육성한 육종가에게 당해 신品种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다. 품종보호대상작물의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품종보호권자는 보호品种의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당귀가 품종보호 대상작물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당귀차를 만들때 당귀차의 재료로 사용된 당귀가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보호品种의 종자를 재배하여 수확된 것이라면 그 당귀차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자의 권리가 영향을 미칠수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UPOV협약에서는 UPOV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내에 모든 작물로 품종 보호대상작물을 확대하도록 돼있어 우리농업의 여건에 맞게 품종보호대상작물을 확대하는 방안마련이 매우 시급한 관제라 하겠다.

신品种보호제도는 신品种



의 개발을 촉진하고 우수 품종의 이용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킬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품종육성능력에 필효한 자본과 기술을 갖춘 선진국과 다국적 종자회사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많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농림부 식량생산국 이덕로 과장은 그러나 "신品种육성자의 권리보호 없이는 우량品种의 개발을 기대할 수 없고 외국에서 개발된 우수品种도 사용할 수 없어 결국 일류 농산물의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육성자권리가 보호되는 농업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신品种보호제도의 목적자체가 육종가의 권리보호에 의한 연구장려 및 농가소득 증대이지만 동맹국간에 자국의 육성品种을 타국에 보호출원하였을

때 자국육성品种이 타국品种에 비해 우수하여야 하므로 우리가 우리品种을 꼭 지키고 타국에라도 보호출원을 하기위하여는 한차원 높은 육종기술로 확연히 우수성이 구별될 수 있는 새로운品种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토종 자원식물 보호차원 신品种개발 시급한 과제

특히 약용작물의 경우 전연율 선호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 우리 토종자원 식물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를 작물에 대한 신品种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품목이 다양하고 각각의 재배규모가 적은 약용작물은 주곡작물이나 채소작물처럼 육종기술이 발전하지도 못했으며 일년생 초본류보다는 다년생 식물이 많고 영양번식형 작물이 많아 교육육종의 방법으로는 육종의 효율도 낮을뿐 아니라 재배규모가 작아 장시간 거대자금을 투입한 신品种 육성이 필요한지 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같은속이라 할지라도 종의 분화가 다양하며 생약

재의 주요생산 소비국인 한국·중국·일본 등에서 이용하는 종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당귀의 경우 중국은 Angelica Sinensis 를, 일본은 Angelica acutiloba 를 한국은 Angelica gigas 를 사용하고 있으며 천궁도 Cnidium spp.를 사용하는 나라(일본)와 Ligusticum spp.를 사용하는 나라가 다르다.

국내 학계에서는 성분이 전혀 다른 국내 토당귀를 중국이나 일본당귀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중국이 당귀를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할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신品种 당귀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 위해서는 품종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국은 아직 약용작물에 대해서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

이에 대해 농진청 작물시험장 성낙술 연구관은 "국내에서 토종으로 재배하여 이용하는 작물을 우선 차별화하여 육성하되 가급적 조속히 해외의 유용유전자원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

연차별 지정계획

연차별	약용작물
전민기	당귀, 지황, 구기자(2000)
(2000~2004)	작약, 시호, 결명자(2002) 맥문동, 백지, 방풍(2004)
후반기	오미자, 하수오, 택사(2006)
(2005~2009)	황금, 독활, 황부자, 치자, 산수유(2009)
2009년~	기타 약용작물

<농진청 작물시험장 자료>

며 도입 확보된 유전자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것으로 법제화된 등록을 필하므로써 지적소유권이나 농부권 주장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유용 유전자원 확보 지적소유권 주장에 대비

우선은 국내에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자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집과 이에대한 특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관행의 특성평가방법 보다 DNA수준의 진보된 기술로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평가기술도 서둘러 개발되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성연구관은 또 "약용작물도 이전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주로 기능성을 위주로 이용되는 점에 초점을 맞춘 특정성분의 고함유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특정성분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육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용작물의 품종보호대상 지정 운영은 생산농가보호 차원에서 시행중인 현행 한약재 수급조절대상 품목 제도와 연계해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것이란 지적이다.

품종보호대상작물의 확대는 이제 세계적 추세이며 특히 유전자원을 이용한 신약개발 경쟁등으로 약용식물자원 개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관행답습으로 더딘 걸음을 해온 국내 생약농업과 생산농민들에게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구태가 계속되는한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무대에서 우리 생약농업은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음을 예고하고 있다.

<문정희>